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1. 26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**의안번호** : 제2031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3(금)

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(화)

2. 제안이유

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비대면 민원행정 활성화 관련으로 청사 편익시설 대관 비대면(온라인) 신청 시 이용 요금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 편익시설 대관 신청 양식을 추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편익시설 종류 : 대회의실 삭제

나. 편익시설 운영시간 : 대회의실 삭제

다. 편익시설 대관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: 신청서 양식 추가

라. 편익시설 사용료: 대회의실 삭제

4. 관계법령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9조제2항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, 청사 편익시설 대관 비대면 온라인 신청 시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편익시설 대관 신청 양식을 조례에 추가 정비하고,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내 회의실 변동 사항을 적 용하고자 2020. 11. 13.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.

나. 주요내용

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.

표1 개정안 주요내용

- 청사 편익시설 대관 신청서 양식 추가
 - 안 별지 제1호서식
- 대회의실란 삭제
 - -안 별표 1, 별표 2, 별표 3
- 부자연스러운 용어 및 문장 정비 : 44건

현 행

개 정 안

[별표3]

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고
광장	_	무 료	○ 전력 사용시 시간당 10,000 원을 부과함 ○ 주민휴식공간은 사용면적에서 제외함
썬큰광 장	1회	8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 사용 초과시 시간당 40,000원 가산함
대회의 실	1회	4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
기획상 황실	1회	4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
대 강당	1회	10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,000원 가산함
구내식 당	1회	9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45,000원 가산함 ○ 1회당 부가사용료 100,000 원 별도가산
체력단 련실	웓	20, 000원	 ○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사용료 징수 ○ 토、공휴일은 휴무 ○ 경로우대자(만65세 이상)는 30% 할인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50% 할인 ※ 할인율 중첩시 높은 할인율 적용
세미나 실	1회	2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대회의 실 (의회)	1회	3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5,000원 가산함
제l소 회의실 (의회)	1회	2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제2소 회의실 (의회)]회	2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
※ 공통사항 ①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

[별표 3] 편익시설 사용료(제9조제3항 관련)

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 고
광장	-	무 료	○ 전력 사용 시 시간당 10,000원을 부과함 ○ 주민휴식공간은 사용면적 에서 제외함
썬큰광장]회	8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40,000원 가산함
기획상황실]회	4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
대 강 당	1회	10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,000원 가산함
구내식당	1회	90, 000원	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45,000원 가산함 ○ 1회당 부가사용료 100,000원 별도 가산
체력단련실	월	20, 000원	○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사용료 징수 ○ 토·일·공휴일은 휴무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(65세 이상)은 30% 할인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등록된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% 할인 ※ 할인율 적용 사유가 겹칠시 더 높은 할인율 적용
세미나실	1회	2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대회의실 (의회)	1회	3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,000원 가산함
제1 소회의실 (의회)]회	2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제2 소회의실 (의회)	1회	20, 000원	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

* 공통사항 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

-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
-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 으로 봄
-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
- ⑤ 시설물의 설치, 철거 등 사용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- 등 평일 18시 이후 및 토·공휴일은 기준사용 요금의 30%를 가산함 (냉난방시 30% 추가가산)
- ⑦ 음향, 조명, 피아노, 빔 프로젝트의 각각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당 10,000원으로 하며 1회 사용시간은 사용승인 받은 편익 시설의 총 사용시간으로 한다.
 (장비의 설치·운영과 피아노조율은 사용자가

※ 별도사항

하여야 함)

의회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

<신 설>

-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
-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 시간으로 봄
-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
- ⑤ 시설물의 설치, 철거 등 사용 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- ⑥ 평일 18시 이후 및 토·일·공휴일은 기준 사용요금의 30%를 가산함 (냉난방 시 30% 추가 가산)
- ① 음향, 조명, 피아노, 빔 프로젝트와 같은 부대 시설 사용료는 각각 1회당 10,000원으로 하며, 1회 사용시간 사용승인 받은 편익 시설의 총 사용시간으로 함(장비의 설치·운영과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하여야 함)

※ 별도사항

구의회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은 구청장에게 위 임하여 처리함

[별지 제1호서식]

편익시설 사용 신청서(제6조제1항 관련)

	편익시설 사용 신청서								
성	Έ								
(호	나 명								
주	소	-							
()	년 월 일 사 업 지 록 번 호	-		전화번호 및FAX					
া	동 전 회	-		E- Mail					
대 (딘 시	대 표 자 명 (단체신청 시)			담당자명 (단체 신청시)					
행사	행사명								
내용	행 주요니	사 1용							
사용	장	소	□ 대강당 □ 썬큰광장 □ 구청광장 □ 기획상황실 □ 세미나실 □ 구내식당						
설	('V'丑 :	표フ])	□대회의실(의회) □ 제1소회의실(의회)						
	□ 제2소회의실(의회)								

	사용일	자	년 월 일							
	사용일시		시 분 ~ 시 분 까지							
사용 일시 ¹	대강당	준비 대관	년	월	일	시	분	~	시	분 까지
r	개관 시	철수 대괸	년	월	일	시	분	~	시	분 까지
현 수 P	막 설 치 무				마	미크			개	
유 무 □ 미설치 비프로										
Ŭ	_ 0	_	0 0			트		사용		미사용
사 용 여 부 □ 난방										
녀 월 일										
	신	청 지	+			()	서명 :	또는	인)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 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.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 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							
				녆	Ī	월	일			
신 청 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

다. 검토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사 편익시설 대관 신청서 양식을 추가하고, 조직개편에 따른 회의실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청사 편익시설 대관 신청서 양식 추가
 -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민원행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청사 편익시설 대관 신청서 양식을 조례에 추가하여 법령을 정비하고, 편익시설 사용자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 서비스 실시
 - 대회의실란 삭제
 - 2018. 1. 1. 조직개편에 따른 9층 대회의실 장소에 미래발전추진단 부서 신설 변동사항 반영
 - 기타 부자연스러운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음.

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, 「지방자치법」제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첨부 : 관련 법령 1부.

관련 법령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 ㆍ규칙의 제정 ㆍ개정 ㆍ폐지 및 그 운영 ㆍ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,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 호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- 라. 노인 · 아동 · 심신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、운영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 · 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 · 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 사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- 가. 소류지(小溜池) , 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나. 농산물 · 임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- 라. 복합영농의 운영 지도
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지도
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- 사. 공유림 관리
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- 차.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
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
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,관리에 관한 사무
- 가. 지역개발사업
- 나. 지방 토목 · 건설사업의 시행
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 ·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 · 체육 · 문화 ·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의 설치·유영·지도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 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 · 등록 · 보존 및 관리
- 라. 지방문화 · 예술의 진흥
- 마. 지방문화 · 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· 감독
- 나. 지역의 화재예방、경계、진압、조사 및 구조、구급